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310

발의연월일: 2022. 1. 10.

발 의 자 : 신영대·김정호·김병기

김윤덕 · 전재수 · 김성환

임호선 · 전용기 · 김경만

오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 화생활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하 여 국내 및 국외 연수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상당수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근속 대신 중도 퇴사 또는 이직하는 경우가 잦을 뿐 아니라,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약 1 천 7백만명으로 방대해 정부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선별 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.

또한 현행법상 문화생활이나 국내 및 국외 연수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, 정부가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하는 한편, 문화생활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

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 항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제1항 중 "증진을 위하여"를 "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"로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정부는 중소기업"을 "정부는 매년 중소기업"으로, "1 0년 이상 장기근속한"을 "5년 이상(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) 근속한"으로, "연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을 "연수와 그에 따른 비용 등 필요한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선발 기준 및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했 개 아 제24조의2(문화생활의 지원 등) 제24조의2(문화생활의 지원 등)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 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 ----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-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29조(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 제29조(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 원) ① 정부는 중소기업, 협동 원) ①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-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 관·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 -----5년 이상(동일 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 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 3년 이상) 근속한-----여 국내 및 국외 연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-----연수와 그에 따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른 비용 등 필요한----------. 이 경우 선발 기준 및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